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4. 28.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 2015년 4월 21일
- 나. 제 출 자 : 김길자 의원 외 5명
- 다. 회부일자 : 2015년 4월 22일
- 라. 상정일자 : 제18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5년 4월 2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길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없어 실제 이용대상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지원계획(안 제4조)
-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서 행위 제한(안 제5조)

-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과 위생점검 기준(안 제6조제1항)
-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관리주체의 조치 협조 요청(안 제7조)
- 어린이공원 등의 지킴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안 제8조)
-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비용 중 일부 예산지원(안 제9조)
- 어린이놀이터 관리 실태를 매년 점검하여 표창(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태선)

-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없었던 현재 시설 관리체제를 즐겁고 유익한 놀이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조례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11조의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의 범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생활권 도시공원 중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제1항의 자치구 사무관할 구분 및 「주택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현재, 어린이 공원은 18개소,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근린공원 및 녹지 12개소, 공동주택 놀이터 등 주택단지 놀이시설 207개를 포함하여 총 237개소가 본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위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정기점검을 통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점검 결과 기준 미달사항에 대해 관리주체의 지도·감독 규정을 두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활용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는 근거 및 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음.

- 관리·지원 부분에서 어린이공원의 예산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 구청장이 편성·집행하고 있어 시설의 유지 및 보수 등은 행정력을 통해 신속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는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시설에 대해서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리주체가 협력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어린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
----------	----

발의연월일 : 2015년 4월 일

발 의 자 : 김길자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없어 실제 이용대상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지원계획(안 제4조)
- 나.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서 행위 제한(안 제5조)
- 다.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과 위생점검 기준(안 제6조제1항)
- 라.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관리주체의 조치 협조 요청(안 제7조)
- 마. 어린이공원 등의 지킴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안 제8조)

바.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비용 중 일부 예산지원(안 제9조)

사. 어린이놀이터 관리 실태를 매년 점검하여 표창(안 제10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푸른도시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라. 입법예고(2015. 4.14 ~ 4.20) 결과 : 의견 반영

마. 타구 제정현황 : 광진구, 노원구, 서초구, 관악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 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내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장소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터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제1항의 사무 관할 구분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3.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 지도
4. 모래 시설의 중금속 검사와 놀이기구 안전 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5. 모래 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7. 다양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8.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 등 설치

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복지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5조(행위의 제한) 어린이공원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 행위
2.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4.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 장치를 이용하여 출입 및 주·정차하는 행위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8.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 및 협조요청)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산확보·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